

박형준 / 3월 / 기초GS+ / 1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5470	20	15	0	0	35	1	0.67%	5	150
515335	20	12	0	0	32	2	1.33%	6	
515740	16	16	0	0	32	2	1.33%	6	
515697	14	14	0	0	28	4	2.67%	5	
515456	15	12	0	0	27	5	3.33%	4	
515529	16	11	0	0	27	5	3.33%	5	
515549	17	10	0	0	27	5	3.33%	5	
516116	17	10	0	0	27	5	3.33%	5	
516737	15	12	0	0	27	5	3.33%	5	
515461	15	11	0	0	26	10	6.67%	5	
515731	15	11	0	0	26	10	6.67%	5	
515532	16	10	0	0	26	10	6.67%	6	
514114	17	8	0	0	25	13	8.67%	5	
515347	13	12	0	0	25	13	8.67%	5	
515366	16	9	0	0	25	13	8.67%	6	
515379	13	12	0	0	25	13	8.67%	5	
515429	15	10	0	0	25	13	8.67%	6	
515457	18	7	0	0	25	13	8.67%	5	
515459	15	10	0	0	25	13	8.67%	5	
515514	15	10	0	0	25	13	8.67%	5	
515568	14	11	0	0	25	13	8.67%	5	
515739	14	11	0	0	25	13	8.67%	4	
516047	14	11	0	0	25	13	8.67%	5	
515667	15	10	0	0	25	13	8.67%	4	
515824	15	10	0	0	25	13	8.67%	6	
517107	12	13	0	0	25	13	8.67%	5	
515354	12	12	0	0	24	27	18.00%	5	
515366	16	8	0	0	24	27	18.00%	5	
515440	13	11	0	0	24	27	18.00%	4	
515482	14	10	0	0	24	27	18.00%	6	
515523	14	10	0	0	24	27	18.00%	5	
515546	14	10	0	0	24	27	18.00%	5	
515988	14	10	0	0	24	27	18.00%	4	
519590	16	8	0	0	24	27	18.00%	6	
515403	14	9	0	0	23	35	23.33%	6	
515446	14	9	0	0	23	35	23.33%	5	
515450	13	10	0	0	23	35	23.33%	5	
515458	16	7	0	0	23	35	23.33%	5	
515510	14	9	0	0	23	35	23.33%	4	
515524	14	9	0	0	23	35	23.33%	6	
515531	14	9	0	0	23	35	23.33%	6	
515572	14	9	0	0	23	35	23.33%	4	
515650	14	9	0	0	23	35	23.33%	5	
515670	14	9	0	0	23	35	23.33%	4	
516079	15	8	0	0	23	35	23.33%	5	
516020	14	9	0	0	23	35	23.33%	6	
515393	13	9	0	0	22	47	31.33%	5	
515480	14	8	0	0	22	47	31.33%	5	
515504	16	6	0	0	22	47	31.33%	5	
515516	13	9	0	0	22	47	31.33%	5	
515517	17	5	0	0	22	47	31.33%	5	
515564	14	8	0	0	22	47	31.33%	5	
515643	16	6	0	0	22	47	31.33%	5	
515659	13	9	0	0	22	47	31.33%	6	
515662	16	6	0	0	22	47	31.33%	5	
515726	13	9	0	0	22	47	31.33%	5	
516046	15	7	0	0	22	47	31.33%	5	
516082	14	8	0	0	22	47	31.33%	5	
516105	13	9	0	0	22	47	31.33%	4	
516230	13	9	0	0	22	47	31.33%	5	
517132	14	8	0	0	22	47	31.33%	5	
516212	13	9	0	0	22	47	31.33%	5	

516963	15	7	0	0	22	47	31.33%	5
515398	12	9	0	0	21	64	42.67%	5
515417	14	7	0	0	21	64	42.67%	5
515423	12	9	0	0	21	64	42.67%	5
515548	13	8	0	0	21	64	42.67%	5
515563	14	7	0	0	21	64	42.67%	5
516415	14	7	0	0	21	64	42.67%	4
516167	12	9	0	0	21	64	42.67%	4
515373	13	7	0	0	20	71	47.33%	5
515420	12	8	0	0	20	71	47.33%	5
515475	13	7	0	0	20	71	47.33%	5
515481	14	6	0	0	20	71	47.33%	4
516310	12	8	0	0	20	71	47.33%	4
516329	9	11	0	0	20	71	47.33%	5
519612	14	6	0	0	20	71	47.33%	5
516691	12	8	0	0	20	71	47.33%	4
517059	12	8	0	0	20	71	47.33%	4
514504	15	4	0	0	19	80	53.33%	4
515370	13	6	0	0	19	80	53.33%	5
515382	13	6	0	0	19	80	53.33%	5
515483	12	7	0	0	19	80	53.33%	5
515539	12	7	0	0	19	80	53.33%	4
515569	13	6	0	0	19	80	53.33%	4
515614	13	6	0	0	19	80	53.33%	4
515664	13	6	0	0	19	80	53.33%	5
515685	13	6	0	0	19	80	53.33%	6
515997	15	4	0	0	19	80	53.33%	4
516005	12	7	0	0	19	80	53.33%	4
516023	13	6	0	0	19	80	53.33%	5
516031	14	5	0	0	19	80	53.33%	4
516904	12	7	0	0	19	80	53.33%	3
515732	12	7	0	0	19	80	53.33%	5
516157	13	6	0	0	19	80	53.33%	5
517018	13	6	0	0	19	80	53.33%	6
517077	12	7	0	0	19	80	53.33%	5
514398	12	6	0	0	18	98	65.33%	3
515409	12	6	0	0	18	98	65.33%	5
515421	10	8	0	0	18	98	65.33%	5
515464	12	6	0	0	18	98	65.33%	4
515486	12	6	0	0	18	98	65.33%	6
515527	12	6	0	0	18	98	65.33%	6
515674	12	6	0	0	18	98	65.33%	5
519401	11	7	0	0	18	98	65.33%	5
517379	14	4	0	0	18	98	65.33%	4
515841	9	9	0	0	18	98	65.33%	4
517150	8	10	0	0	18	98	65.33%	5
514532	9	8	0	0	17	109	72.67%	5
515355	11	6	0	0	17	109	72.67%	3
515487	12	5	0	0	17	109	72.67%	5
515535	13	4	0	0	17	109	72.67%	5
515579	16	1	0	0	17	109	72.67%	5
515679	12	5	0	0	17	109	72.67%	6
515947	12	5	0	0	17	109	72.67%	5
515984	9	8	0	0	17	109	72.67%	5
516035	15	2	0	0	17	109	72.67%	6
516125	12	5	0	0	17	109	72.67%	5
516239	14	3	0	0	17	109	72.67%	4
515519	12	4	0	0	16	120	80.00%	4
515658	11	5	0	0	16	120	80.00%	6
515738	11	5	0	0	16	120	80.00%	5
515844	10	6	0	0	16	120	80.00%	5
515913	13	3	0	0	16	120	80.00%	5
515668	9	7	0	0	16	120	80.00%	5
515447	8	7	0	0	15	126	84.00%	4
515964	15	0	0	0	15	126	84.00%	6

516114	15	0	0	0	15	126	84.00%	6
515462	10	4	0	0	14	129	86.00%	5
515491	8	6	0	0	14	129	86.00%	5
515492	7	7	0	0	14	129	86.00%	5
515509	14	0	0	0	14	129	86.00%	5
515846	11	3	0	0	14	129	86.00%	6
515826	14	0	0	0	14	129	86.00%	6
515385	12	1	0	0	13	135	90.00%	4
515444	8	5	0	0	13	135	90.00%	5
515657	9	4	0	0	13	135	90.00%	4
516148	13	0	0	0	13	135	90.00%	5
515512	10	2	0	0	12	139	92.67%	5
516120	10	2	0	0	12	139	92.67%	5
515378	11	0	0	0	11	141	94.00%	4
515479	6	5	0	0	11	141	94.00%	4
516158	11	0	0	0	11	141	94.00%	5
516169	9	2	0	0	11	141	94.00%	4
516030	3	7	0	0	10	145	96.67%	5
515672	9	0	0	0	9	146	97.33%	5
515734	8	1	0	0	9	146	97.33%	5
516881	5	1	0	0	6	148	98.67%	4
516976	3	0	0	0	3	149	99.33%	5
515655	1	0	0	0	1	150	100.00%	4

박형준/3월/기초GS Plus /16회/1~2번	채점자
	강경민

1. 문제 1

(1) 설문 1-2)

제 139조 2항, 3항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간혹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분도 있었으니 주의해주세요.

(2) 설문 1-3)

심결취소소송에서 공유자 1인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문제로, 대부분 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3) 설문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답안이 주논점 판례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으셨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을 근거로 당사자, 법원의 입장에서 심리범위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설문 3

당사자계와 비교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의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사님 답안처럼 <심리범위, 주된취지 부합의 의미, 주선행발명을 변경한 경우, 사안해결>의 순서대로 작성한 경우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복습 시에 잘 정리해주세요. 특히 사안해결시 “실질적으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주된취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함.” 이라는 문구를 잘 살려서 사안 포섭하는 것을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문제 2

PCT에 관한 기본 문제들이었습니다. PCT 문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면 대부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 이번 기회에 복습 철저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채점하면서 느낀 것은, 사안 해결의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답안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 문제에서 판례-사안의 순서로 설문을 해결하듯이, PCT 문제에서 각 조문은 사안을 해결하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이를 작성해주지 않은 경우 단순 암기식 답안이라는 느낌이 들어 답안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채점시에도 일부 감점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1]

I. 문제(1)-1)

1.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사행위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권이 공표된 경우 그 기한을 상당한 부분은 공표로 인하여 상실될 수 있는
필요 있는 경우 특허권 공표권이라 한다

2. 무효심판 청구권 주체

(1) 법 제 139조 2항

공표된 특허에 대한 특허청에 대하여 심판은 청구하는 당사자 또는 제 3자로서
하여야 한다.

(2) 사안

제 3자 또는 제 2항을 제 3자로서 하여 무효심판은 청구하여야 한다.

3. 특허권 침해행위확정심판 청구권 주체

(1) 법 제 139조 3항

특허권 침해자가 그 권리 침해에 대하여 심판은 청구하는 당사자 또는 공표된 심판
청구하여야 한다

(2) 사안

제 3자 또는 제 2항을 제 3자로서 특허권 침해행위확정심판은 청구하여야 한다.

II. 문제(1)-2)

1. 특허법 제 18조

특허법에는 위법한 심판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이다. (제 18조)



①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②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2 번째 특허청에 출원한다 ③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2) 결론

대부분의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한 후~~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①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②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원번호가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4. 4항

- ① 실용성 상의 ^{가장} 심판단에 관한 규정은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청에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 ② 실용성 상의 심판단에 관한 규정은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청에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청에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 ③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청에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

[문제2]

I. 1항(1)

1. 1항(1)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청에 가장 가까운 특허청에 출원한다. (1항(1)항)



2. 국제출원인 인정

국제출원인 인정은 국제출원인 인정규약 있다. (신1992 18)

3. 발명예외

발명이 인정 받은 국가와 달리 국제출원인 인정규약이 있는 경우 특허법 49조

명목에 따른다. (신1992 28)

4. 도면작성관련서 규정

(1) 국제출원

도면의 다른 개가 되어있거나, 도면의 청구항을 그 개를 삭제해야 한다. (신1992 32)

(2) 국제출원후 규정

① 도면은 국제출원. 도면의 도면은 국제출원으로 작성한다. (신1992 48 부록)

② 도면은 국제출원, 출원. 도면의 다른 개는 삭제하여 작성한다. (신1992 48 단서)

5. 다만

(1) 발명예외

무엇 도면의 다른 개가 있는 국제출원은 허용이 된다.

(2) 국제출원인

발명예외. 도면은 국제출원 규약으로 작성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인 2022. 4. 8이 국제출원인이 된다.

II. 실용 (2)

1. 국제출원 작성

① 대한민국 국가의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작성한다. (신1992)

② 다만, 특허가 있는 발명의 국제출원은 작성한다. (신1992 내지 신2014)



2. 개사권리

- ① 특허 대한민국 국민지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 있는 자이다.
- ② 다만, 재외국민도 특례적인 법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권리를享有한다. (특 206조)

3. 국민배출 제도

특수 이유로 국민배출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원(출원일부터 2년 9월)인 2024년 9월 3일 4월 국민배출을 적용해야 한다. (특 201조)

4. 시범제출

특수 재상제출기간인 2024년 9월 3일 4월 특 203조 2항의 시범제출해야 한다. (특 203조)

5. 우선 순위

특수 관련 우선 순위 발생해야 한다. (특 62조)

6. 심사권리

특수 출원일부터 3월 25. 2.3까지 심사권리는 한정된다. (특 59조, 특 210조)

II. 특허

1. 신규성(신규성) 전환

- ① 2019년 1월 1일 개시일은 신규성을 신규성으로 전환하였다.
- ② 출원인의 권리범위가 개시 발명이 출원일은 5년 타당하다.

2. 특허권 행사

(1) 권리행사

특허권자에게 지출된 비용의 상당, 특허권의 물 대면 '특허권자에게 지출된 비용'을 갖는다. (특 200조 2 2항)

공통제 1]

I. 실용(1) - 1)

1. 확인상판(법1392) 파생구입적격

(1) 의의 취득

분쟁의 발원적해권수단으로, 공익상이지 않는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파생구입적격 - 1392조 2항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상판을 청구할 때는 공유자 모두를 파생구입으로 해야한다.

(3) 소청구한 확인상판의 파생구입적격 - 甲 2.

따라서 모든 甲 2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하고, 관여 누각한 경우, 후극에 법1402조 2항 항에 따라 누각한 공유자 추가가능하다.

2. 적극적 권리방위 확인상판 청구인적격 확인적격

(1) 의의 취득

권이 신묘한 분쟁예방. 공분위한 권리방위(독부판단) 성립이다.

(2) 적극적 확인상판 청구인적격 모 - 법1392조 1항

특허권자가 제기할수있다.

(3) 특허권공유인 경우 - 법1392조 3항

공유인 특허권의 청구 특허권자 모두가 청구하여야한다.

(4) 제1 조 상대 로 만 상판 의 청구인적격 - 甲 2

따라서 甲 2 은 공동으로 조 상대로 상판 청구하여야한다.



II. 선출(1)-2)

~~II. *~~

1. 문제점

상결추외도동은 ~~상판의 법 139조~~ 2항. 3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2. 학설

① 공유권추적, 공동도동설과 ② 유사권추적, 공동도동설이 있다.

3. 공유자 1인의 상결추외도동 원리적재

(1) 상결관계 - 무효상판, 권리방위 확인상판

상결법에서 대법원은, 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소제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러~~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② 공유자 1인만이 소 제기한 경우라도 항의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③ 공유자 중 1인이라도 권리소멸방지,

권리방사방해배제위해 기간성격에 대한 상결추외도동 제기할 수 있다 하며 ④ 유사권추적, 공동도동 설이 입장이다.

(2) 최근 특허법원 관례 - 거절판재발보상판

최근 특허법원 사안에서, 공유자 중 1인이라도 권리피해 방지 위해 상결추외도동 제기할 수 있다 하였다.

(3) 결론.

상결추외도동 제가는 민법상 분권배위(민법 265조 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1인이라도 소제기 가능하다는 판례 타당하다.

4. 변론 - 甲은 2. 공은 甲. 2. 공동채무

따라서 분리한 심결은 받은 甲. 2은 ① 甲은 2이 단독으로
 심결채(2)도 공 제기가 가능하며, ②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甲과 2이 함께 소제기하는 것이다.

Ⅱ. 심결 (2)

1. 문제점

심결채(2)도 공은 심결전치주의 (법 18626 항)를 기본으로 하는 바,
 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로 심결채(2)도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는지 묻혀진다.

2. 학설

① 심결전치주의를 근거로 새 사유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제한설과

② 변론주의 및 심판에서의 처권 탐지주의를 근거로
 새로운 사유 주장 가능하다는 무제한설이 존재한다.

3. 판례 - 무제한설원칙

판례는 ① 상판은 행정 처분이고, 심결채(2)도 공은 항의이므로

② 심결채(2)도 공의 소송권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③ 당사자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특별항소

이 없는 안법원은 이를 제한없이 상. 판단하여

판결의 기권상은도 있다하여 ④ 무제한설입장

이나, ⑤ 당사자 절차권 보장위해 일부 제한하고 있다.

4. 결론

심결취미소송의 소송료, 심판·소송주제, 기소생리관계도
고려할 때 무제한설 입장 확고한 편에 속하는 듯하다.

5. 결론. - 새사위 주장·입증가능

따라서 빠른 심판절차에서 생리·판단되지 않았던 사유는
심결취미소송 단계에서 제한 없이 주장·입증하리 법원으로
이른 생리하여 판단의 기준 확립 가능하다.

IV. 결론 (3)

1. 문제점 - 심결취미소송 위키·취지 (법186조)

당사자의 법원에게 판단받을 절차보장위한 것으로 취법한
심결은 취법함을 구하는 데이다. 사안에서는 당사자 절차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심결 취미
소송인바, 생리방위기 대해 검토하곤 사한다.

2. 문제점은 거절이유 - 진보성 (법2조 2항)

(1) 의의 취지

산업발전 촉진 및 기술발전 촉진 위하 공제반영으로부터
용이하게 할명할 수 있는 반명은 등록받을 수 있다.

(2) 판단방법

① 추천반명 선명반명 확정안뒤 ② 추천반명라 가장
가까운 '추천반명' 결정 후 ③ 추천반명라 추천
반명간 공동성·차이점 결정후 ④ 통상의 기술자 관행
에서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추천반명으로부터
추천반명이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한다.

(3) 사안 - 주선해발형 변경

사안은 심결취(2)도동기시 전보성 판단의 전제사실은 주선해발형을 선해발형 (이러 선해발형 2개 변경한 바,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3. 거절결정보복심판 심리방위

(1) 판례

1)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는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하는 거절결정이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은 안속없고 (법 62조, 63조, 110조), 의견제출기회 부여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2) 심결취(2)도동기 '같은 취지'에서,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유지하는 판결은 안속없지만, 이미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사안이나 주원 취지에서 복합하는 사유가 존재 주장할 수 있다(2)한다.

(2) 전보성 판단시 의견제출기회 부여 판단방법.

전보성의 경우, 선해발형이 동일하거나, 판단의 전제사실, 판단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여 주원인에게 기대되는 변경의 방향이 같다면 이미 부여한 사유와 주원 취지에서 복합하는 사유라고 한다.

(3) 전보성 판단시 주선해발형 변경

다만, 판례는 전보성 판단시 주선해발형을 변경한 경우 주원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거절이유가 없다. /

(4) 검토

주선행발등달아지면 권한이 낫아도, 예시달는 보정방하로
변정달는 바, 딸레타당하다.

(5) 사안 - 새 거절이유하다.

따라서 특허청이 심판국(2)로 당계에 이르러 주선행발등
은 선행발명 (이서 2로 변경한 것은 의견제출기회 부여
한적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이다.

4. 결론 - 주장 부담.

~~따라서 특허청~~ 선행발명 2인 거절이유에 대하여 이점이
이치적 차상발명 이리 있다는 특별한사정 보이지 않으므로,
특허청은 심판국(2)로 이르기 선행발명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 불가하리, 그러나 주장 부담' 하라.

ㄱㅇ

[문제 2]

1. 실문 1)

1. 제2항의 의의 및 취지

발명의 제2항의 발명인 전차간선화위해

발명의 제2항의 발명인 전차간선화위해

2. 제2항의 인정 (법 33)

(1) 제2항의 인정 (법 33)

제2항의 인정 (법 33) 인본의 하나인 인본



작성된 ~~문서~~ - 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특히
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제위원의 인정요건(법 142조 1항)

다만, ① 출제위원 직책 응급, ② ~~법 142조 1항~~ 1항, 2항, 3항의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③ 발명의 실용이나 청구범위가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④ 출제위원 기재가 없는 경우 출제위원의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3) 사안 - 도면부제 존

법 142조 1항 각호에 도면을 저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출제위원의 본인개시 사유로 상고 있지 않은바, 그 취급이
문제된다.

3. 도면부제 존해라

(1) 통지(법 142조 3항)

① 도면에 관하여 출제위원에게 적고 있으나 도면이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안에서도 ~~문은 2022.4.3~~ 이러한 취지를 발한 것이다.

(2) 도면 저촉 / 부제 존시 취급(법 142조 4항)

i) 도면을 저촉한 경우 도면부제 존의 출제위원이 된다

ii) 도면을 저촉하지 아니한 경우,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사안

문은 2022.4.3 도면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저촉한바,

타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파악된다 이 경우 법194로
4항에 따르면 국제출원인인 경우 명칭 없이 도면이 관한
기재만 있었던 것은 보다.

4. 사안 - 국제출원인: 2022.2.3

도면 부처준기 따라 이미 인정된 국제출원인 2022.2.3이
늦춰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무엇~~ 재의사는 법192조의
출원인 자격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법194조항 등이 따라
출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II 실문 (2)

1. 국내당계전입 - 국내서면제출 (2032)

(1) 출원인은 국내서면 제출기간 (우선일로부터 2년 1개월) 내에
2032 각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안

타사서 ~~무엇~~ 2024.9.3까지 ~~내부~~ 법2032에 따른
국내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당계전입 - 번역문 제출

(1) 법 2032 (항 후단)

출원인은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까지
번역문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안

~~무엇~~ 외국어로 국제출원시 제출한바, 한국의 번역문은
2024.9.3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 ~~법~~ 진입 - 우선권 및 생사채구

- (1) 출원인은 2이로, 특허청에 우선권 및 생사채구하여야 한다.
- (2) 따라서 ~~특~~ 한국 특허청에 우선권 제출하러 출제출원인인 2022.2.3부터 3년내인 2025.2.3까지 생사채구 하여야 한다.

IV. 실용 (3)

1. 명세서출원지위

- (1) 법 193 - 국제출원시
출원인은 국제출원을 명세서 제출하고 있는 바, 명세서
으로 국제출원 ~~한~~ 가능하다.

- (2) 법 200조의 2 - 최초명세서 및 다른
법 200조의 2에 따라 명세서 제출된 국제출원인은
국내출원인에서 최초명세서 및 다른지위를 가진다.

2. 국외출원지위

- (1) 법 203조 (항후단 - 국내진입시 시지)
국외출원인은 국내당국에 진입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시지
해당한다.

- (2) ~~법 208조~~ ~~분쟁~~ 법 208조항 - 분쟁시
국외출원인은 법 208조항에 따라 분쟁시 지위가 있다.

IV. 실용 (4)

1. (5년)공개재발

- 2 (5년)공개재발 기인 발명을 주지기시 원통주요로 ~~발~~했다.



